



## 북경 카이리 자산 서비스 유한공사 VS KTH 기금 관리 유한 공사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23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7)高知终字第252 号
판결 일자	2007년 4월 13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북경 카이리 자산 서비스 유한공사 (홍콩 타이완 합작기업)		
원심피고(피상소인)	KTH 기금관리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영업비밀	공사 업무자료, 전자메일 및 관련 데이터 자료 등 경영정보		
키워드 (Keyword)	경영정보(经营信息), 증거(证据), 소송 보전조치(诉讼保全措施), 집행(执行)		

### 02 사건 개요

KTH 기금관리 유한공사(이하 'KTH 공사')의 법정 대표인 왕도우는 2003년 1월 북경 카이리 자산 서비스 유한공사(이하 '카이리 공사')의 '동사'로 임명된 일이 있는데, 2003년 3월 10일 KTH 공사와 사건 외 부루모보거 공사가 1건의 임대 협의서를 체결하고 컴퓨터 1대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컴퓨터는 왕도우가 카이리 공사 재임시 사용하였던 것을 가지고 온 것이다.

왕도우는 2003년 8월 사고로 카이리 공사의 직무를 정지하였고, 카이리 공사는 왕도우가 사용한 컴퓨터 내에 자신의 상업비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왕도우가 컴퓨터를 가져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왕도우는 2003년 8월 26일 해당 컴퓨터를 카이리 공사 총경리 사무실에 봉쇄하여 보존할 것을 신청하였고, 카이리 공사는 해당 컴퓨터를 사건 외 중진핑더 공사로 이전하였다.

KTH 공사는 2004년 2월 5일 카이리 공사와 중진핑더 공사에 임대한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컴퓨터를 찾지 못하여 집행이 종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카이리 공사는 KTH 공사에 본 사건 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상업비밀이 담겨있는 컴퓨터의 소재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카이리 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카이리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피상소인)

원심판결의 중요한 사실 누락(왕도우가 ‘봉쇄되어 보존된 컴퓨터에 저장되고 본 공사 업무에 관계된 정보와 자료’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심 판결에 승복

원심판결의 사실착오(카이리 공사는 컴퓨터가 중진평터 공사에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원심판결은 카이리 공사가 컴퓨터의 위치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 04 판결 요지

카이리 공사가 영업비밀의 보호를 청구하려면, 응당 보호를 청구하는 영업비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KTH 공사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카이리 공사는 보호를 청구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못하며, KTH 공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컴퓨터의 소재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카이리 공사의 상소청구를 기각한다.

### 05 Key Point

권리자가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함에 있어서, 우선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분명히 특정하여야 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대상의 특정과 입증책임의 분배는 중국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